



보도시점

2026. 4. 20.(월) 11:00
4. 21.(화) 오전

배포 2026. 4. 20.(월) 09:00

축사·도축장을 활용한 에너지 전환에 박차

- 축사시설현대화사업·축산물도축가공업체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시 신재생 에너지 발전시설 설치 예정인 사업자 우선선정·가점부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중동전쟁 등으로 국제 에너지 가격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축산업계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정부지원 사업을 개편할 계획이다.

중동전쟁 이전부터 지속된 농업용·산업용 전기요금 상승*으로 인해 축산업 경영비에서 전기요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꾸준히 상승해 왔다. 사료·에너지 등 투입재의 상당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활용을 확대하고 에너지 저감과 자원순환 확대를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 농사용 저압 전기요금 : ('21년) 34.2원/kwh → ('26년) 59.5원/kwh
농사용 고압 전기요금(여름·겨울) : ('21년) 36.9원/kwh → ('26년) 62.2원/kwh
산업용 전기요금 : ('22년) 105.5원/kwh → ('26년) 194.1원/kwh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농식품부는 축사·도축장 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재생에너지 활용을 확대하거나 에너지 저감 시설·장비를 도입하려는 경우 시설개선 자금을 지원받기 용이하도록 사업 지침을 개정한다.

축사시설현대화 사업은 축사 시설·장비를 개선하여 생산성을 향상하고자 하는 사업자에게 1%의 저금리로 사업자금을 융자하는 사업이다. 농식품부는 시설 신·개축에 더해 신재생 에너지 발전 시설(태양광·열, 지열 등)을 설치하려는 농가가 사업 신청 시 가산점을 부여하여 에너지 전환을 촉진할 계획이다.

다만, 태양광·열 설비는 건축물에 설치해야 하며 축산농가는 생산된 에너지를 축산업에 직접 이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으나, 농업법인은 에너지를 축산업에 직접 이용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한다.

축산물도축가공업체 지원사업은 도축장의 시설개선을 통해 위생적이고 효율적인 생산·도축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자에게 2~3%의 금리로 사업자금을 융자하는 사업이다. 도축장의 시설개선에 더해 태양광 시설 설치 등 에너지 고효율화를 위한 시설 장비를 도입하려는 신청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도축·가공시설 개·보수를 지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 이재식 축산정책관은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위해서는 생산비 절감을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가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재생에너지 활용 확대와 자원 순환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붙임 1.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시행지침(요약)

2. 축산물 도축가공업체 지원사업 시행지침(요약)

담당 부서	축산정책관실 축산정책과	책임자	과 장	신우식 (044-201-2311)
		담당자	사무관	임성호 (044-201-2326)
담당 부서	축산정책관실 축산유통팀	책임자	과 장	전익성 (044-201-2371)
		담당자	사무관	한병운 (044-201-2322)

1. 지원대상

- '14.12.31일 이전에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된 농업인 및 농업법인(신청일 현재 축산업 허가, 등록이 유지되는 경우)^{FTA기금}
-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된 농가 및 농업법인 혹은 해당 축종 농장 실무경력 3년 이상 또는 축산 관련 학과 졸업자가 신규로 축산업을 시작하는 경우^{농특회계 이차보전}

2. 지원 조건

- 지원조건 : 융자* 80%, 자부담 20%
- * (FTA기금) 연1%, 5년 거치 10년 상환, (이차보전) 연2%, 5년 거치 10년 상환

3. 자금 사용용도

- 축사 : 가축사육공간으로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건축물 완성을 위해 필요한 기초공사, 골조, 축벽, 지붕 등에 지원 가능
- 축사시설 : 가축 사육을 위해 축사 내부에 설치되어야 하는 시설로서 가축 사육 목적을 위해 축사 건축물에 부속되어 설치된 시설
- 안전시설 : 채광창 덮개, 집수조·분뇨처리시설 추락 방지시설 등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시설
- 신재생 에너지 발전 시설
 - 태양광·열(건축물에 설치), 지열, 지중열 등으로 생산된 에너지를 축산업에 직접 이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음
 - 다만, 농업법인은 에너지를 축산업에 직접 이용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 가능

4. 가점 부여 대상

- 방목생태 축산농장, 친환경 축산물, 무항생제 축산물, 저탄소 축산물, 동물복지 축산농장, 깨끗한 축산농장, 환경친화 축산농장 인증 사업자
- 축사표준설계도서에 따라 축사를 신축하는 사업자
- 특별재난지역 내 피해축사로서 특별재난지역 선포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사업신청을 한 농가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축산지구 내에 축사 신축 또는 증개축하려는 농가
- 축사시설개선에 더해 신재생 에너지 발전 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려는 사업자

1. 지원대상

- ①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도축업자(지자체포함)
 - * 가금류는 입·출구 동선 분리 등 소독·방역시설 개·보수 및 전기요금 등 경영비 절감을 위한 태양광 시설 등 설치에 한하여 지원(소규모 도계장 신청자는 지원가능)
- ②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식육포장처리업, 식육가공업, 식육 즉석판매가공업,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식용란선별포장업(지자체포함)
- ③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식품소분·판매업을 영위하는 자중에서 꿀 “등급판정”을 위한 시설 및 장비를 신축하려는 자

2. 지원 조건

- (지원내용) 지원한도액의 70% 융자(자부담 30%)
- (융자금리) 연리 2.0~3.0%(생산자 2.0%, 일반업체 3.0%) 또는 변동금리
- (상환기간)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3. 우선 지원 대상

- 가축운송차량에 대한 도축장 입·출구 시설 증·개축(우선 지원)
 - * 참고자료 1 ‘도축장 입·출구 분리운영 가이드라인(안)’을 준수하여 도축장 입·출구 시설을 증·개축하여야 함
- 도축장 자동화 시설 설치 및 개보수(우선 지원)
- 출하장 위생 방역시설·장비 설치 지원(사업계획서 내 포함여부 확인)(우선 지원)
- 도축장 전기요금 등 경영비 절감을 위한 시설·장비 설치 및 개보수(자가용 및 사업용 태양광 시설, 배전설비 개선 등 우선 지원)

5. 지원 한도액

- 도축장 전기요금 등 경영비 절감을 위한 시설·장비 설치 및 개보수: 사업 계획 검토 후 지원액 결정(단, 태양광 시설의 경우 100kw 당 1.2억원 이내)
 - * 자금 신청 수요가 많을 경우 사업자 인허가 절차 등 진행 여부 등을 고려하여 배정